

한국 농촌계획의 방향정립과 과제

윤 원 근

협성대학교 교수

Directions and Tasks of Rural Planning System in Korea

Won Keun Yoon

Professor, Hyungsung University

Summary

The directions and tasks of rural planning system can be accessed by the three view points of planning theory that are value formation, mean identification and effectuation. The concept of rural planning in Korea have been confronted with many problems and need to make new paradigm being able to develop depressed rural area.

The highest value in rural planning have been changed from economic development oriented to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iented. Also, the strategy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changed rapidly. The growth pole theory and agricultur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have been replaced by the urban-rural linkage theory and multi-sectoral development strategy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spatial development. In recent, The implementation instruments of rural development focus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ce in rural area.

Key Words : Rural Planning System, Value Formation, Mean Identification, Effectuation

I. 문제의 제기

농촌계획은 농촌지역에 있어서 공간과 사회·경제에 대한 장래 행동의 판단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획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현상과 동향을 충분히 인식한 후, 문제점을 추출하고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행위이다(谷野 陽, 1994: 358).

농촌계획의 개념은 장래의 바람직한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가치영역과, 그리고 그러한 가치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론영역,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영역, 다시 말하면 가치-이론-실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임길진, 1995: 21).

한국에 있어서 농촌계획의 개념은 도시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발전의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론적인 논의와 실제의 적용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촌공간이 산업화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기능적 역할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단순히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민이 살고 있는 농업의 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시에 비하여 개발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제기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문적인 수단으로서 도시계획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적인 개념인 농촌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촌은 근년에 이르러 급격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농촌공간은 더 이상 농업 및 농민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농업이 더 이상 농촌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농촌에 있어서 비농업과 연계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자원의 활용의 통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모색하려는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종래의 도시 중심적인 이론체계는 도시와 농촌의 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려 발전시키려는 이론으로 대체되고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농촌개발과 관련된 사무의 지방이양의 필요성과 주민 참여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제도의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에는 종래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농촌계획제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계획의 개념은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제도적 변화를 수용하고, 현재의 농촌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II. 농촌계획개념의 시대적 변천과 유형

1. 농업기반사업형 농촌계획

해방이후 주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식량생산은 농촌개발의 과제였다. 식량증산

을 위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농업증산 5개년 계획(1953~1957)을 수립하였다¹⁾. 그리고 식량증산을 위한 기초하부시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지정리, 개간, 간척을 농정의 주요한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토지개량사업법(1961), 공유수면매립법(1962) 등 제반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토지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서울거주 실업자를 대상으로 귀농정착사업(1961)의 일환으로 시작한 개간사업은 개간촉진법(1962)의 개정으로 가속화되었다. 1962년~1966년 5년간에 총경지의 6%에 해당하는 약 11만 정보가 개간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187-195). 이처럼 정부형성 초기의 대표적인 산업은 농업이었고 대표적인 건설사업 또한 이와 관련된 농업토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경지정리와 개간 및 간척 등의 사업은 주로 기존 토지의 개량과 토지의 외연적 확장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경지와 연관하여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거주공간과의 종합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농촌 마을계획형 농촌계획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은 1958년에 시행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iy development program)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을의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마을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을의 농업생산확대, 소득증대, 생활개선,

- 1) 식량증산을 위한 제1차 농업증산5개년계획(1953~1957)이 기상조건, 기술, 투자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58년을 기점으로 제2차 농업증산5개년계획(1958~1962)이 뒤이어 수립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128-142).
- 2) 1948년 한국에 처음 도착한 불도저가 저수지 공사에 투입될 정도로 당시의 국토건설은 주로 저수지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된 국토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40%를 소류지 건설사업에 투자할 정도였다(이정재, 1995:17-18).

의식개혁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자연부락 단위의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시행하다가 1962년 이후에는 여건이 비슷한 여러 개의 자연부락을 개발단위로 광역화시켜서 지도사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CD사업은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으로 편입되었으며, 새마을운동 추진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6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도시와 농촌간의 상대적 발전격차를 시정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경기침체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촌인력을 농촌부문에 고용시켜 실업의 압력을 둔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을의 기초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신개발사업, 생산소득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마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 이후 추진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개별주택, 농경지, 마을공동시설, 마을임야 등의 마을전체의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경사회에서 마을은 농촌주민의 생활과 생산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기본이 되는 공간단위였다. 마을을 기본으로 하는 마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촌계획의 기본으로서 관행화 되어있다.

3. 지역농업계획형 농촌계획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여건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구조의 다양화, 상업적 영농의 지향, 농업기계화 및 새로운 기술개발, 농산물 수입의 확대 등에 따라 종래의 획일적인 주곡의 증산정책에서 농가소득과 지역성을 고려하는 생산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군 단위를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처음 지역농업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역농업의 개념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적 범역을 갖는 영역의 농

업, 다시 말하면 행정구역상 또는 개발목적에 따른 계획지역단위에서의 농업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지역농업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업소득 목표계획, 자원이용 배분계획, 작목계획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지역단위 농업의 종합개발을 통한 안정된 농업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농산물 개발, 생산기반조성, 기계확대 보급, 가공 및 상품성 제고에 의한 판매확대사업 등에 초점을 두는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의 부문계획으로서 제기된 지역농업계획은 그 후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이 제정되면서 전국 시·군의 농어촌발전계획으로 발전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서의 수단을 적시하고 있는 산업계획이다.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행정부서의 각종 사업이 제외되어 있고, 공간 계획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4. 기본구상형 농촌계획

농촌개발에 대한 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본격적인 논의는 1981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의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개발철학의 전환에 따른 지방정주생활권 개념의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지역생활권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수정계획에서는 종래의 성장거점전략에 근거한 단핵구조의 국토공간형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성을 강조하고 지방의 정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금까지의 농업개발론 및 마을중심의 개발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대안적 개발방식으로서 농촌지역종합개발이 제시되었다. 농촌지역종합개발은 “농촌정주생활권을 기본 계획단위로 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개발의사를 토대로 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경제, 정주기반,

사회·문화 등의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적인 개발이다(최양부·이정환, 1987:135-152). 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장인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키면서 쾌적한 도시적 편익을 갖춘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농촌을 인간정주의 지역사회로 개발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종합개발은 1985년에 군(郡)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정부정책화 되었으나, 실천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계획내용이 농촌정주, 농촌경제, 농촌사회, 농촌환경 등의 비 공간적인 면과 공간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과거의 계획에 비하여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군 단위에 대한 최초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郡) 지역종합개발계획은 비록 농촌 계획이라고 명명된 바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논의가 요구되었다. 군 단위 내의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고 농촌의 관점에서 중심지인 도시를 바라보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동시에 계획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도시계획까지도 포괄하여 동시에 계획하는 것을 과연 농촌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하는 것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계획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설정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서 기본구상 또는 기본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군 단위의 모든 사업을 망라함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할 사업을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일면이 있으나, 이는 과대예산의 문제를 가져오고, 예산 부서의 사업예산 지원포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지역계획형 농촌계획

종래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농 복합시와 군 지역을 대상

으로 시·군 건설종합계획을 시와 군의 필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였다(동 법 제3조). 즉 시와 군이 의무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시·군 건설종합계획의 성격이 지역의 장기적인 목표 및 지침에 가까운 기본구상적인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1월 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개정하여 국토기본법으로, 그리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하여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제정배경은 수도권 근교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심각한 난개발의 문제를 해소하고, WTO 체제 이후 제기된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의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있어서의 규정하고 있는 농촌계획은 종래의 농촌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지역계획적인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토기본법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 또는 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법 제6조),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위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포함된 도·농 복합시와 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는 것은 곧 농촌계획을 의무화하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종전의 도시계획구역만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제도가 없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군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종래의 군 건설종합계획과 그리고 법제화되지 못한 군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정립과 관련된 기본계획 또는 기본구상의 성격을 가진 계획이었으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군 관리계획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구체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종래 난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의 범역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행위제한을 종래의 제한행위열거 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바꾸어 토지의 공간이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대폭 줄임으로써, 개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밀도인 용적률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을 보다 어렵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넷째, 농촌취락단위에 대한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가 만들어졌다. 국토계획법(제37조)에서 보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취락지구를 규정하고 있다.³⁾ 이러한 농촌취락지구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하여 행위제한 완화 및 건폐율·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신설되었다.

III. 한국 농촌계획개념의 흐름과 방향정립

1. 새로운 가치영역의 방향정립

현시점에 있어서 농촌계획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계획의 목표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농촌공간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농

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국민전체의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이 아닌 공업, 농촌이 아닌 공업단지외 도시지역의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농촌계획에 있어서는 농촌공간을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위한 농업기반의 확충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종래의 농촌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기반사업, 농촌마을정비, 지역농업계획 등의 농촌계획으로 나타났다. 그 후 기본구상적인 농촌계획으로 발전하였으나, 계획에 의한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하였고 도·농간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시혜적인 차원의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개발의 지향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보전을 우선시하는 환경주의의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촌지역에 지속가능성을 적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차 하위가치의 개발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더 이상 농업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계획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가치인 지역성(regionalism)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지역주의는 자연적인 핸디캡을 가진 농촌지역도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그것을 통한 자립적인 농촌사회로서 존속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大内力, 1996:135-152). 농촌을 과거처럼 식량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역마다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로서 역사성과 문화성, 농업과 농촌의 독특한 경관미를 가진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3)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누어진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동 법 시행령 제31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무라쯔꾸리사업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 사업의 지향가치로는 지역주의(regionalism)(森巖夫, 1996: 6), 그리고 개발이론으로서 내발적 발전론(endogenous development)(西野壽章, 1998: 121)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는 도시 및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

2. 이론영역의 방향정립

1)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연계

초기의 농촌계획은 농업을 중시하는 농업기반사업형이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농업기반사업을 하면서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사업과도 연계가 없이 기반사업, 주거공간정비 등의 개별사업별로 사업이 시행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형태는 지금까지도 그 근본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1985)이 시행되었으나 종합이라는 언어에 대한 잘 못된 이해와 예산상의 부족, 중앙정부의 부처별 활거주의에 의한 사업방식의 고수 등의 이유로 이 또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농촌종합개발사업(1985)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주생활권 개념에 입각해서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당위적인 사업까지도 망라하여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앙정부는 종래의 보조금사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자원의 조사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적 사업과 농촌적 사업이 연계되는 그

러한 종합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자원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테마를 설정하고 그 테마를 달성할 수 있는 농업·농촌정책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농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알맞은 농업·농업사업이 찾아져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발전계획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현시점은 농업 및 농촌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촌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없고, 농촌정책의 도움이 없이는 농촌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유럽 선진국과 일본 등에서는 농업이 가진 고유의 기능인 식량생산의 기능보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전통적인 지역사회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2) 사회-경제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지역계획은 공간구조계획 및 공간규제계획에서 보는 공간계획과 주로 경제·사회계획에서 보는 소프트계획으로 구분이 된다. 공간구조계획은 지역공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실행수단으로서 주로 공적 자금을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계획이 해당된다. 공간규제계획은 공간질서의 유지와 형성을 위한 사적 자금을 의한 건설 및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계획이다. 실행수단으로서 주로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제한이 주로 이것에 해당된다. 소프트계획으로서 경제·사회계획은 공간계획의 전제인 동시에 제 활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상 직접 개인에 대한 명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종래의 농촌계획은 주로 물리적 시설물 위주의 하드(hard) 사업에 중점을 두어왔다. 초기에는 농업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었고, 그 후에는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

어왔다. 주택개량, 도로의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 등이 주요사업이고, 현재는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계획은 오히려 이러한 물리적인 시설 위주의 사업에서 발전하여 사회·경제적인 소프트 사업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사업과 소프트(soft) 사업방식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종래의 지역발전을 위한 전통적 자본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왔던 전략은 우리 농촌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유지·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 도시와 농촌의 연계

농촌은 인구규모와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며 인공적인 물리적 시설물보다는 자연적인 공간이 많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동질적이고 단순한 사회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배후지역의 역할을 하고 생활과 생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靑木志郎, 1984: 27-30). 전통적으로 농촌은 곧 마을을 의미했다. 산업화이전에는 마을 내에서 마을주민들의 생활 및 생산과 관련된 일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마을은 자족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독자적인 사회조직과 관습을 지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강한 사회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최근 농촌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농촌주민의 생활권 범역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의 범역 또한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의 공간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도시의 범역 또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은 서로 만나고 연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도시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토지의 이용과 이에 따른 난개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촌의 과소화, 황폐화를 배경으로

도시주민의 농촌관광, 도시자본의 유입 등의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전제로 한 공생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종래의 이론은 도시와 농촌을 연속적 또는 공생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농촌계획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도시는 주변 농촌지역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은 도시주민의 여가와 관광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미 도시와 농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도시의 아름다운 공간창조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농촌도 이제는 농민만이 사는 농업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농민과 비농민이 함께 살고, 농업과 비농업이 혼재된 혼주화(混住化)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행정적으로도 중심 도시와 배후 농촌을 묶어서 시로 승격시키는 도시·농촌 통합적인 행정 체제로 이미 변화했다. 국토계획법의 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도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4) 농촌성을 살리는 농촌계획

농촌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역사·문화의 육성, 양호한 농업 및 농촌경관의 보존의 순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윤원근, 2003b: 5-15). 기존의 정책기조인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효율성 위주의 정책과 농촌의 생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 추구의 정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에 따라 농촌의 획일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문화유산의 파괴를 초래하고 농촌이 지닌 발전적인 가치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WTO 체제하에서 제기된 농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을 살린 새로운 농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의 정책전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종래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고 농촌지역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정책에서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퀀터 크로스, 2001: 7).

3. 실천영역의 방향정립

1)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와 주민 참여

지방자치체의 실시 및 최근의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지방행정은 지방의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수행 기능을 지방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농촌계획과 관련된 사무는 사업대상지역의 공간적인 범위가 지방행정구역의 범역 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의 분장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사무이다. 앞으로의 농촌계획은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한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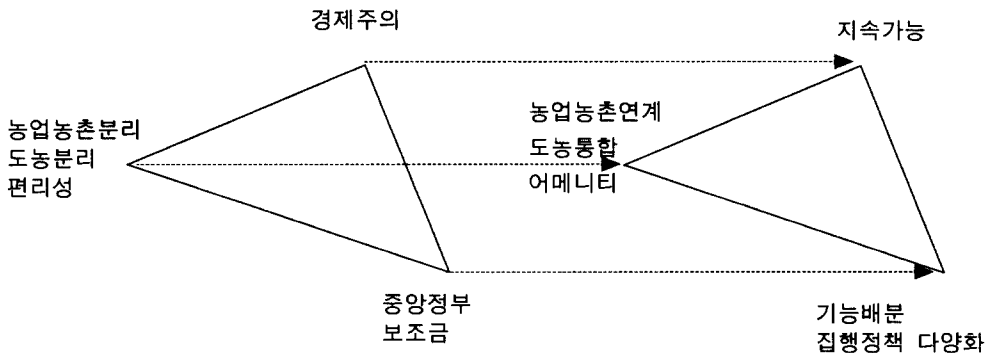
맞추어 농촌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들이 지방자치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계획과 관련된 주체인 지방정부, 주민(기업가), 전문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개발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개발하거나 계획과정에 임하는 이른바 공동생산방식 등의 협력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다.

2) 토지이용규제 강화의 불가피

도·농 통합형의 행정구역, 광역행정 필요성의 증대 및 국토계획법에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개발압력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제도에 따라 난개발은 위험은 크지 않지만, 농촌지역은 아직도 용도지역제를 기본으로 함에 따라 난개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근교농촌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정비의 방향은 농촌공간의 지역



<그림 1> 농촌계획의 방향정립

적인 특성을 살리는 적극적인 개발방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농촌공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농촌의 아름다움, 경관, 역사·문화 자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공간에서 소극적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에 대한 토지이용상의 규제가 불가피하고 중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한국농촌계획 개념정립을 위한 과제

1. 가치영역의 과제

환경과 문화를 강조하는 국제연합의 노력과 세계학문의 추세에 따라 농업과 농촌계획에 관련된 앞으로의 정책은 지속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도시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이 개념이 적용되면서 농촌개발에까지 확산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이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원리 및 전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자들 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아직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최상위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차 하위가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환경회의가 천명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경제적인 지속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할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비경제적인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체제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정지용, 2002: 2-10).

그리고 종래에 농촌에 있어서 농업개발과 농촌개발의 관계 및 개발의 가치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농촌개발이 농업개발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농촌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여,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범위 속에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이 포함되고, 농업개발 및 농촌개발의 가치 및 원리가 같은 방향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론영역의 과제

1) 농촌계획구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시와 군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도시지역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농촌지역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군의 행정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농촌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비도시는 있어도 농촌은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계획구역 내에서도 실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구역(또는 정비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과 대등한 농촌계획구역이 만들어질 경우 그 대상구역의 범위는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없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계획구역 내에서 미리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기존의 사업방식은 농촌의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어 온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농촌마을은 인구 감소 및 혼주화 등에 따라 농촌마을의 공간이 되었던 공동성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마을단위가 보유하고 있었던 정주기능은 위로는 중심도시로 아래로는 가구단위로 상·하향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상문, 1998:65-72).

따라서 새로운 기초가 되는 농촌의 실제의 계획 및 사업구역은 보다 광역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지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농지형 및 자연적 지형에 따른 마을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산간골짜기형 정비구역, 그리고 이러한 정비구역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정비구역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원근, 1999a: 213-235).⁴⁾ 또한 마을주민의 생활권은 인근의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마을은 거주공간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일차적인 중심지인 소도읍에 계획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연계 모형

종래의 농촌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적인 시각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농촌 내에서도 농업 및 농민만을 대상으로 해움에 따라 농업과 연관된 기반시설 및 농업과 연관된 산업개발, 그리고 농민과 연관된 정주여건의 개선에만 중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현시점은 농촌은 더 이상 농민만의 공간이 아니며, 그리고 농촌은 더 이상 공간적으로 도시와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분리주의적인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안으로서 도·농간의 연계 또는 통합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첫째는 도·농간의 공간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이미 행정구역상으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

는 도·농 복합시가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의 행정적으로 분리된 시와 군을 통합함에 따라 중심지인 도시와 주변지역인 농촌이 지역전체의 관점에서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 시·군 행정구역의 중심지와 그리고 소도읍 및 배후지인 농촌마을을 공간적으로 연계하고 기능을 재배분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계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도시와 농촌을 계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갖추어졌으나, 그러나 농촌부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행정적인 통합이 요구된다. 농촌개발의 담당부처가 다기화되어 있음에 따라 농촌개발사업끼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개발사업과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부서간의 농촌정비사업에 대한 연계는 물론이고, 시·군 행정구역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통합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계획체계와 지방정부의 행정을 연계시키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3)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

종래의 농촌개발전략은 농업 및 농민에 중점을 두고 도시의 편리성을 지향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농업에 의한 농촌발전의 한계성이 노정되고, 도시를 지향하는 농촌의 정주정책은 농촌공간의 획일화를 가져옴에 따라 농촌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성의 상실은 농촌자체의 매력의 상실을 가져오고, 이는 소비자인 도시민으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능과 다면적인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의 활용을 통한 농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농촌어메니티(amenity)의 자원화와 계량화를 통한 가치평가와 이의 활용방안의 모

4) 농촌지역에 대한 실제의 정비구역의 규모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조영국·김성진(1998)의 연구가 있으며 정주공동성, 시설투자의 타당성, 지역계획체계와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조정된 결과 농촌의 생활환경정비구역은 농촌의 법정리 단위로 수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색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촌은 농산물의 생산만으로는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도시와의 사회문화적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구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농촌어메니티의 잠재적인 가치개발을 통하여 상품화의 필요성에 주목을 하고 이의 활용을 주요한 농촌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농촌자원은 자연적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자원을 생활자원적 가치의 측면과 관광자원적 가치의 측면에서 개발하여 농촌주민에게는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주고, 도시민에게는 관광 및 방문기회의 증진을 통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박창석, 2002:6). 그러나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는 아직도 시론의 단계에 있으며 더 발전되어야하는 과제이다.

3. 실천영역의 과제

1)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모색

종래의 농촌공간에 대한 개발과 정비는 정부부처별 사업수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농촌공간에 대한 정비는 관련부처의 개별사업의 하나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농촌계획을 제정하기 보다는 부처별로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부처별로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근교 농촌에서의 난개발의 해결과 지방자치체의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촌개발의 방식이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농촌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를 위한 토지이용의 필요성의 증대는 농촌정비에 있어서 자치단체 및 주민역할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정부지침이나 개별법률에 의한 농촌정비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법률, 조례, 지침의 종합적인 관계속에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농촌의 계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농촌계획관련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 및 조례의 보완적인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지침행정이 요구된다(윤원근, 2003c: 3-14). 특히 농촌취락에 있어서의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정책은 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취락에 있어서의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을 통한 농촌의 정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한계가 있다.

2)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대등한 체제 구축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에서는 시와 군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행정구역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군의 계획도 하나의 지역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명칭은 있어도 농촌기본계획, 농촌관리계획이라는 말은 없다. 도·농 복합시는 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 더 많은 곳이다. 비도시지역의 비율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계획은 지역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도시계획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계획은 시와 군 지역 내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 농촌계획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만일 지역전체

가 도시지역이고 농촌지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계획은 곧 도시계획이 되고, 역으로 지역전체가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계획은 곧 농촌계획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해도 농촌지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또 농촌이라고 해도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계획 내에는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이 둘 다 포함되게 마련이다.

3)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준비

농촌취락단위에 대한 계획이 제도화되었다. 국토계획법은 농촌지역에도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유보되어 있다. 다음의 측면에서 보다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일반농촌지역에 대한 취락지구의 지정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소규모의 일반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 근교지역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용도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농촌토지이용의 분류에 있어서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체계가 아직도 형성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농촌계획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용도지역의 재검토 및 소단위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상세 용도지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면적이 농촌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세부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가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의 경우는 면적이 크고 시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이 줄어들

다. 오히려 농촌계획의 경우는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소분류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정착이 더 필요하다.

V. 결 론

농촌계획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거듭해왔다. 농업의 발전과 성장을 우선하는 계획에서 농촌지역이라는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가치의 측면에서는 국가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주의적 가치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변화하였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농업중심, 도·농 분리적인 정책수단이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의 발굴과 농촌발전전략과의 연계, 소비자인 도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추구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공간단위도 농지 및 마을중심에서 마을과 인근도시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광역화되고 있다. 실천의 측면에서도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농촌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계획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보다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도 미흡하다. 가치, 이론, 실천이라는 틀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다행히 국내외적인 여건이 농촌계획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부와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다.

VI. 참고 문헌

1. 쿤터 크로스, 2001, "유럽의 농촌개발전략,"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7.

2. 박창석, 2002, “농촌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 자원의 중요도 평가 및 순위적 관계분석,” 농촌어메니티 워크샵자료집, 협성대학교: 1-6.
 3. 윤원근, 1999a, 한국농촌계획론, 서울: 대학출판사.
 4. 윤원근, 1999b, “한국농촌계획의 개념형성과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3):54-58.
 5. 윤원근, 2003a,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서울: 보성각.
 6. 윤원근, 2003b, “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개발 정책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1-22.
 7. 윤원근, 2003c, “농촌의 계획적 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 모색,”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3-14.
 8. 이상문, 1998, 20세기 후반 한국농촌마을의 정주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 이정재, 1995, “농촌계획과 농공학,” 농촌계획, 1(1):17-18.
 10. 임길진, 1995,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 서울: 나남출판사.
 11. 정지용, 2002,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의 방향,” 농촌계획, 8(3):1-14.
 12. 조영국·김성진, 1998, “농촌생활환경정미구역의 설정,” 농촌계획, 4(1):15-21.
 13. 최양부·이정환, 1987, 산업사회의 농촌발전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한국농정40년사.
 15. 谷野 陽, 1994, 國土と農村の計劃, 農林統計協會.
 16. 大內 力, 1996, 中山間地域對策, 農林統計協會.
 17. 森巖 夫 外, 1996, 地域づくり讀本, ぎょうせい.
 18. 西野壽章, 1998, 山村地域開發論, 大明堂.
 19. 青木志郎, 1984, 農村計劃論, 農山漁村文化協會.
- (2004년 5월 10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